

#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9. 15 (금)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6. 9. 25(월)

다. 상정일자 : 2006. 9. 27(수) 제1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9.27) 상정·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가.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어린이집의 명칭 및 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수탁받은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위탁 취소사유 및 위탁금지에 관한 사항, 시설물 등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어린이집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어린이집 관리·운영 및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기타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6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가. 본 조례안은 용평면 장평리 산144번지에 개설 운영될 평창군공립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어린이 집의 업무,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위탁계약, 위탁운영 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 시설물의 반환 및 시설장과 종사자 임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 검토결과

- 조례안을 작성함은 일정한 형식과 체계·자구·내용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 작성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와 법제심사를 마친 다음 최종 결재를 얻어 의회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있으나 본 건을 검토한 바
- 관계법령 인용시 맨 처음 사용한 법규에 법규명칭을 표기한 다음에 (이하 "법" 또는 "영"이라 한다)등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 안 제1조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인용 후 안 제4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으로 인용하여 체계상 모순이 있고
- 안 제7조중 "계약일로부터"는 계약일부터"로 하고 제12조제2항의 "그리하지 아니한다"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로 표기되어야 하며
- 조에서 항을 시작할 때는 제목에서 한타를 ②항부터는 "제0조"에서 "제"하고 한타 띄어쓰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본문 전부 준수하지 않았고

- 조례안의 본문중에서 관계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그 법령의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에는 표기되지 않는 등 자구와 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부칙의 경우에는 규정상 항의 수가 5개를 넘거나 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 조로 구분하도록 하고 부칙에 규정할 사항이 시행일 규정 밖에 없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항에 관한 아무런 구분표시없이 시행일만 규정하는 것이 조례 입법례이나 부칙에 조를 설치함은 잘못 입안되었으므로 조와 제목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조례작성 직원의 오류와 법제실무부서의 법제심사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소홀히 하므로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들이 반복적인 오류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므로
-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불임 수정 요지 부분에 대하여 먼저 치유를 한 후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불임1의 조례안 중 수정안의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불임2】** :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붙임1]

## 조례안중 수정안의 요지

| 조 례 안  | 수 정 안  |
|--|--|
| <p><b>【본문】</b><br/> <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4조(위탁운영) ①~②생략</b><br/>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u>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u>」(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7조(위탁운영기간)</b>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u>계약일로부터</u>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p> <p><b>제12조(시설물등의 반환) ①(생략)</b><br/>         ②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한다</u>.</p> <p><b>제15조(관계법규 준수)</b>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u>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u>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b>제1조(시행일)</b>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p><b>【본문】</b><br/> <b>제1조(목적)</b> ----- 「<u>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u>」(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br/>         -----<br/>         -----.</p> <p><b>제4조(위탁운영) ①~②(원안과 같음)</b><br/>         ③-----<br/>         -----<u>시행규칙</u><br/>         -----<br/>         -----.</p> <p><b>제7조(위탁운영기간)</b> -----<br/>         ----- <u>계약일부터</u> -----<br/>         -----<br/>         -----.</p> <p><b>제12조(시설물등의 반환) ①(원안과 같음)</b><br/>         ②-----<br/>         -----<br/>         -----<br/>         -----<br/> <u>아니한다</u>.</p> <p><b>제15조(관계법규 준수)</b> -----<br/>         ----- 「<u>근로기준법</u>」, 「<u>국민연금법</u>」, 「<u>국민건강보험법</u>」 및 「<u>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u>」-----<br/>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  |

#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년 9월 27일

제안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  |
|----------|--|
| 의안<br>번호 |  |
|----------|--|

## 1. 수정이유

- 조례안은 일정한 형식과 체계·자구·내용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이에 조문을 적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안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수정
- 나. 안 제4조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수정
- 다. 안 제7조 중 "계약일로부터"를 "계약일부터"로 수정
- 라. 안 제12조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수정
- 마. 안 제15조 중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을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으로 수정
- 바. 안 부칙 중 "제1조(시행일)"을 삭제

#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안 제7조 중 "계약일로부터"를 "계약일부터"로 한다.

안 제12조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안 제15조 중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지급 기준"을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  
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으로 한다.

안 부칙 중 "제1조(시행일)"을 삭제한다.

# 수정안 대비표

| 조 례 안  | 수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위탁운영) ①~②생략<br/>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u>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u>」(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위탁운영기간)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u>계약일로부터</u>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p> <p>제12조(시설물등의 반환) ①(생략)<br/>                     ②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한다</u>.</p> <p>제15조(관계법규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u>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u>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 <p>제1조(목적) ----- 「<u>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u>」(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p> <p>제4조(위탁운영) ①~②(원안과 같음)<br/>                     ③-----<br/>                     -----<u>시행규칙</u>-----</p> <p>제7조(위탁운영기간) -----<br/>                     ----- <u>계약일부터</u> -----</p> <p>제12조(시설물등의 반환) ①(원안과 같음)<br/>                     ②-----<br/>                     -----<br/>                     -----<br/>                     -----<br/> <u>아니한다</u>.</p> <p>제15조(관계법규 준수) -----<br/>                     ----- 「<u>근로기준법</u>」, 「<u>국민연금법</u>」, 「<u>국민건강보험법</u>」 및 「<u>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u>」-----</p> |
| 부 칙  | 부 칙  |
|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3 |
|----------|----|

제출년월일: 2006. 9  
제 출 자: 평 창 군 수

## 1. 제 안 이 유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립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 2. 주 요 골 자

- 가. 어린이집의 명칭 및 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라.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수탁받은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위탁 취소사유 및 위탁금지에 관한 사항, 시설물 등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사. 어린이집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아. 어린이집 관리·운영 및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평창군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기타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6조)

## 3.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별 첨
- 나. 입법예고: 2006. 6.30~7.19 실시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평창군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의 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기간)**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완공)과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4.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2.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자

**제12조(시설물등의 반환)** ①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 ①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보고는 임면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면을 철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군수는 시설장을 제외한 기타 종사자가 본인이 희망하고 시설장의 제청이 있을 때에는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관계법규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어린이집 관리·운영 및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서(제6조제1항 관련)

| 계 약 당 사 자  |               |                    |  |
|--|---------------|--------------------|--|
| 갑  |               | 평 창 군 수            |  |
| 을  | 주 소<br>(법인명)  | 전 화 번 호            |  |
|  | 성 명<br>(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br>(법인등록번호) |  |
| 위탁(수탁)시설의 표시   |               |                    |  |
| 명 칭  |               | 설치연월일              |  |
| 소재지  |               | 보육 정원              |  |
| <p>○○ 어린이집을 위탁관리 하고자 위탁자 평창군수를 "갑"(이하"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 ○○○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다.</p>   |               |                    |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                    |  |
| 계약내용 :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함  |               |                    |  |
| <p>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평창군영유아보육 조례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탁자(갑) : 평 창 군 수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수탁자(을) : ○ ○ ○ (인)</p> |               |                    |  |

# 관계법령 발췌

## 1.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 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생략)**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 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 별표 1 ⇒ 별첨

### 3.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①여성가족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제 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1.법인의 정관,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2.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 3.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4.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5.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한 후 별지 제 16호서식의 보육시설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⑧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제25조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위탁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 1] <개정 2005. 6. 23>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제21조관련)**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가정보육시설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영아전담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 등 급     | 자 격 기 준   |
|---------|---|
| 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br>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 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br>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사. 위의 가.~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